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2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·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·폐지하였으며
-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였으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감면 (제5조)
 -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취득세·등록세·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
- ⇒ 특별시·광역시외의 경우 50%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50% 경감 조정함

○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 폐지(제6조)

-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감면하였던 것을
⇒ 사업종료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함

○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경감(제7조)

-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면제하였으나
⇒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설에 대하여도 50% 경감함

○ 임차인이 경락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(제12조)

-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을 최초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·등록세 감면하였던 것을
⇒ 임대의무기간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 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함

○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(제13조)

- 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·등록세 50% 경감하였던 것을
⇒ IMF이후 주택경기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
-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
⇒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주택과 같이 면제함

- 제6조에서 의료지역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 폐지사유로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도내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영동, 진천, 단양군의 의료시설 현황 및 동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한 사업완료시 까지의 감면 실적과
- 제28조에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0%감면하던 규정을 전액 면제하려는 사유 및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의 추진상황과
- 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도세 세입의 전반적인 예상 증감변화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